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27 선고 2020가단2276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 2021. 3. 23

판결 선고 2021. 4. 27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,709,617원 및 그 중 298,238,851원에 대하여 2019.11. 11.부터 2020. 7. 13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8.경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 피보험자 를 주식회사 E로 하는 이행(상품판매대금)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고,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그런데 2019. 9.경 보험사고(피고 회사의 주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 불이행)가 발 생하였고, 원고는 그 무렵 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서 2019. 10. 11. 보험금 298,238,851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위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은 주문 제1항 기재와같다.

[인정근거]o 피고 회사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)o 피고 D :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취지

### 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D은,자신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사업주는 주식회사 E의 대표 F인데 F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보증보험약정에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정도영